(붙임 2)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지원범위)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대구광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이하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이라 한다)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실적 2. (생 략)	**제2조(지원범위)**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대구광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이하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이라 한다)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실적 2. (현행과 같음)	-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어 관할지역에서 삭제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생 략) ②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대출실적 전액을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일반지원한도로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체 한도 중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40%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대출실적 전액을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일반지원한도로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제5항을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 전략지원부분 운용규모 설정방식 명시 - 참조 조항 변경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생 략) <신 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로 한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생 략) ⑤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대출실적 전액을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일반지원한도로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④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대출실적 전액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일반지원한도로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본부장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설정 근거 신설 - 항 번호 내림,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 삭제 - 항 번호 내림, 중복내용 삭제 - 항 번호 내림 - 항 번호 내림, 참조 조항 변경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 ③ (생 략) ④ 제6조제4항의 신용등급 제한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조제5항의 신용등급 제한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 참조 조항 변경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부 칙 (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